

제273회 정례회  
2008. 7. 14(월)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

# 검 토 보 고 서

건설문화위원회  
전문위원

# I. 결산 개황

## 1. 일반회계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①	예산성립후증감액②			예산 현액③ (①+②)	지출액 ④	이월액 ⑤	집행 잔액 (③-④-⑤)
		전년도이월	예비비사용	이체				
계	531,687,208	93,955,949	1,181,532	-5,027,740	621,796,949	554,416,486	62,683,690	4,696,773
균형발전국	73,233,059	310,000	-	-4,645,420	68,897,639	67,153,750	978,500	765,389
건설방재국	220,598,583	92,187,294	1,141,532	73,080	314,000,489	263,799,547	48,758,559	1,442,383
문화관광환경국	210,392,933	898,968	-	-411,400	210,880,501	203,569,671	5,173,519	2,137,311
생명산업추진단	27,462,633	559,687	40,000	-44,000	28,018,320	19,893,518	7,773,112	351,690

## 2. 예비비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1,181,532	663,029	488,782	29,721
건설방재국	1,141,532	663,029	450,782	27,721
생명산업추진단	40,000	-	38,000	2,000

## 3. 기금결산 및 채권현재액

### □ 기금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마)=가+나
		계(나)=(다-라)	수납액(다)	지출액(라)	
계	24,646,980	-1,822,495	7,901,943	9,724,438	22,824,485
문화예술진흥기금	11,694,712	750,261	1,425,093	674,832	12,444,973
재난관리기금	12,952,268	-2,906,061	3,144,586	6,050,647	10,046,207
환경보전기금	-	333,305	3,332,264	2,998,959	333,305

### □ 채권현재액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이행기간 도래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합 계	39,140,720	4,035,000	3,022,000	3,022,000	0	40,153,720
일반회계	39,140,720	4,035,000	3,022,000	3,022,000	0	40,153,720
건축팀	38,985,720	3,960,000	2,992,000	2,992,000	0	39,953,720
체육과	155,000	75,000	30,000	30,000	0	200,000

## II. 소관별 검토 내역

### 1. 균형발전본부 소관

#### 가. 일반회계

#### 1) 세항별 집행 및 불용액 현황

##### ○ 세항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③-④-⑤)	
			계	명시	사고		
계	68,897,639	67,153,751	978,500	978,500	0	765,389	1.1%
균형정책팀	5,606,120	5,587,828	-	-	-	18,292	0.1%
지역개발팀	40,511,035	40,503,186	-	-	-	7,850	-%
신도시건설팀	2,038,580	375,209	978,500	978,500	-	684,871	33.6%
교통물류팀	10,963,360	10,923,812	-	-	-	39,548	0.4%
건축팀	9,778,544	9,763,716	-	-	-	14,828	0.2%

##### ○ 명시이월 사업현황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사업명	이월금액	이월사유
합 계	4건	978,500	
신도시건설팀	혁신도시 홍보광고판설치 임차료	5,000	혁신도시 일괄이전 결정 지연
	혁신도시 중앙방송 및 일간지 홍보	43,500	혁신도시 일괄이전 결정 지연
	혁신도시 홍보광고판 설치비	230,000	혁신도시 일괄이전 결정 지연
	혁신도시 진입도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700,000	혁신도시 일괄이전 결정 지연

## ○ 세항별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불용액	원 인 별 내 역					비 고
		계획변경 취 소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계	765,389	0	696,515	19,783	49,091	0	
균형정책팀	18,292	-	8,000	3,613	6,679	-	
지역개발팀	7,850	-	6,192	1,658	-	-	
신도시건설팀	684,871	-	672,323	4,500	8,048	-	
교통물류팀	39,548	-	10,000	6,714	22,834	-	
건축팀	14,828	-	-	3,298	11,530	-	

## 2) 검토내역 및 의견

- 2007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출결산을 검토한 바, 예산현액 688억 9천 764백만원의 91.0%에 해당하는 671억 5천 372만원이 지출되었고, 1.4%에 해당하는 9억 7천 850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1%에 해당하는 7억 6천 539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 하였음.

☞ 이월사업중 명시이월사업은 총 4개 사업에 9억 7,850만원 으 로 혁신도시 일괄이전 결정 지연으로 절대 공기부족 등의 요인 으로 이월 하였음

※이월 내역 2007회계연도결산서(행정자치위원회소관) 117쪽 참조

☞ 또한, 불용액은 총예산액대비 1.1%인 7억 6천 539만원으로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으로 세입·세출결산은 적정하다 사료되나

명시 이월된 사업에 대한 혁신도시추진 관련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검토내역**

1)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19,853,897	12,999,783 (115.8%)	19,592,283 (85.2%)	3,407,500 (14.8%)	0	3,407,500
공공예금 이자수입	667,000	666,658	666,658	-	-	-
순세계잉여금	13,686,897	3,686,897	13,686,897	-	-	-
일반부담금	5,500,000	6,048,099	4,779,976	1,268,123	-	1,268,123
지난년도수입	-	2,598,129	458,752	2,139,377	-	2,139,377

2)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가	예산성립 후 증감 나 (전년도이월)	예산현액 다 (가+나)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19,853,897	0	19,853,897	252,133 (1.3%)	0	19,601,764 (98.7%)
예비비	19,600,897	-	19,600,897	-	-	19,600,897
징수교부금	210,000	-	210,000	209,395	-	605
과오납금 등	43,000	-	43,000	42,738	-	262

3) 검토내역 및 의견

-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37.8%가 증가한 198억 5,400만원으로
  -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의 115.8%에 해당하는 230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85.2%에 해당하는 195억 9,200만원이 수납 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의 14.8%에 해당하는 34억 7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비율 (%)		미수납액 B-C	불납결손액 D	초과세입 E=C-A
				C/A	C/B			
2007년	19,854	23,000	19,592	98.7	85.2	3,407	0	△262
2006년	14,407	16,310	13,712	95.2	84.1	2,598	0	△695
증감율	37.8	41.0	42.8	3.5	1.1	31.1	0	-

-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1.3%인 2억 5,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96억 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음.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D=B-A	B/A	D/A
			계	명시	사고			
2007년	19,854	252	0	0	0	19,601	1.3	98.7
2006년	14,407	25	0	0	0	14,382	0.2	99.8
증감율	△21.1	108	0	0	0	36.3	-	-

-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일반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이 85.2%로 저조한 바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총 지출액이 전년도 2,500만원에 비해 9.9% 증가한 2억 5,200만원이 지출 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지출이 크게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 검토내역**

1)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 결 정 액 B	수납액 C	비율 (%)		미수납액 B-C	불 납 결 손 액 D	초과 세입 E=C-A
				C/A	C/B			
합 계	6,458	5,143	5,146	79.7	100.1	0	-	△1,312
공공예금 이자수입	46	46	46	100	100	-	-	-
순 세 계 잉 여 금	3,712	3,712	3,712	100	100	-	-	-
일부 담 반금	2,700	1,385	1,388	51.3	100.2	-	-	△1,312

2)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D=B-A	집행율 B/A
			계	명시	사고		
합 계	6,458	1,049	0	0	0	5,409	16.2
기타부담금	1,080	976	0	0	0	104	90.4
예 비 비	5,297	-	0	0	0	5,297	-
징수교부금	81	73	0	0	0	8	99.5

## 3) 검토내역 및 의견

-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47.6%가 증가한 64억 5,800만원으로
-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의 79.7%에 해당하는 51억 4,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1%인 51억 4,600만원이 징수 되었음.

##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비율 (%)		미수납액 B-C	납 결손액 D	초과 세입 E=C-A
				C/A	C/B			
2007년	6,458	5,143	5,146	79.7	100.1	-	0	△1,312
2006년	4,375	4,412	4,412	100.8	100	0	0	37
증감율	47.6	16.6	16.6	-	-	0	0	-

-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16.2%인 1억 4,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4억 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D=B-A	집행잔액 B/A
			계	명시	사고		
2007년	6,458	1,049	0	0	0	5,409	1.3
2006년	4,375	700	0	0	0	3,675	16.0
증감율	47.6	349	0	0	0	47.2	-

-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일반 부담금은 징수 결정액 대비 51.3%인 13억 8,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율이 저조한 바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액의 82%가 예비비로 편성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참고자료]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개정 2007.1.19>) 대도시권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3.5.29, 2007.1.19>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기타 第1號 내지 第5號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1.1.29]

제11조의2 (부담금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2005.1.27, 2007.1.1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제11조제4호의 주택건설사업중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4. 제11조 각호의 사업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②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2007.1.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4.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행되는 제11조 각호의 사업

[본조신설 2001.1.29]

제11조의3 (부담금의 산정기준) ①제11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 ÷ 200)} - 공제액
2. 제11조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②제11조제6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위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개발비는 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08.3.2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면적·용적률·건축연면적·공제액 등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9]

제11조의4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①부담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부담금은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는 날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경과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로 한다.

④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등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9]

제11조의5 (이의신청) ①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9]

제11조의6 (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①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40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중 광역교통시설계정에 귀속한다. <개정 2007.1.19>

②징수된 부담금의 나머지 100분의 60은 제11조의7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③징수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2.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3. 「도로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도, 지방도 및 시·군·구도중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9]

제11조의7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받는 대도시권에 해당되는 시·도는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사업비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

③기타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9]

## 마. 채권현재액 보고서

### 1)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이행기간 도래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합계	38,985,720	3,960,000	2,992,000	2,992,000	0	39,953,720
일반회계	38,985,720	3,960,000	2,992,000	2,992,000	0	39,953,720
건축팀	38,985,720	3,960,000	2,992,000	2,992,000	0	39,953,720

### 2) 검토의견

- 2007년도말 현재 채권현재액은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사업으로서 399억 5천 372만원으로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사업임

## 2.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 가. 일반회계

#### 1) 세항별 집행 및 불용액 현황

##### ○ 세항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명시	사고	
합 계	314,000,490	263,799,550 (84.0%)	48,758,559 (15.5%)	42,428,006	6,330,553	1,442,381 (0.5%)
건설정책팀	150,789,795	129,204,476	21,014,726	17,163,885	3,850,841	570,593
하천관리팀	87,751,022	75,056,965	12,576,771	11,939,149	637,622	117,286
재난관리팀	34,337,651	26,277,068	7,983,085	7,862,877	120,208	77,498
지역안전팀	486,209	454,599	-	-	-	31,610
토지정보팀	1,336,939	1,326,491	-	-	-	10,448
도로관리 사업소	26,328,175	21,840,484	4,034,622	2,965,919	1,068,703	453,069
도로관리 사업소총주지소	12,970,699	9,639,467	3,149,355	2,496,176	653,179	181,877

##### ○ 세항별 불용액 현황

(단위:천원)

세 항 별	불용액	원 인 별				
		계획변경 취 소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합 계	1,442,381	0	3,400 (0.2%)	90,018 (6.2%)	1,327,268 (92.0%)	21,695 (1.5%)
건설정책팀	570,593			3,845	566,748	
하천관리팀	117,286			3,664	91,951	21,671
재난관리팀	77,498	-	3,000	12,074	62,424	
지역안전팀	31,610	0		11,432	20,178	
토지정보팀	10,448			4,171	6,277	
도로관리 사업소	453,069	-	400	31,344	421,325	
도로관리 사업소총주지소	181,877	-	-	23,488	158,365	24

## 2) 검토내역 및 의견

○ 2007연도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세출결산을 검토한 바,

예산현액 3,140억 49만원의

84.0%에 해당하는 2,637억 9천 9백만원이 지출되었고

15.5%에 해당하는 487억 5천 8백만원이 이월 되었으며

0.5%에 해당하는 14억 4천 7백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음.

☞ 명시이월사업은 총 72개사업에 424억 2천 8백만원으로

- 도로건설 분야 29개 사업에 171억 6천 4백만원,
- 재해대책 분야 30개 사업에 119억 3천 9백만원,
- 재난관리 분야 2개 사업에 78억 6천 3백만원,
- 건설종합관리 분야 6개 사업에 29억 6천 6백만원,
- 충주지소운영 분야 5개 사업에 24억 9천 6백만원이

문화재 발굴조사 및 터널설계 변경, 보도설치 등 중앙부처와의 계획변경협의, 절대공기 부족 등의 요인으로 이월 하였음.

☞ 사고이월사업은 총 23개 사업에 63억 3천 1백만원으로

- 도로건설 분야 13개 사업에 38억 5천만원,
- 재해대책 분야 5개 사업에 6억 4백만원,
- 하천관리 분야 1개 사업에 3천 3백만원,
- 재난관리 분야 1개 사업에 1억 2천만원
- 건설종합관리 분야 2개 사업에 10억 6천 9백만원,
- 충주지소운영 분야 1개 사업에 6억 5천 3백만원이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 미불용지 보상 등으로 사고이월 하였음

※이월 내역 2007회계연도결산서(건설문화위원회소관) 151~157쪽 참조

☞ 또한, 불용액은 총예산액대비 0.5%인 14억 4천 7백만원으로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으로 세입·세출결산은 적정하다 사료되나

사고 이월된 사업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금 지연, 기타 공사지연

사유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나. 예비비 검토내역

### 1)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지 결 정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용액	지 출 사 유 (지출결정일)
예 산 과 목								
건설재난관리본부(합계)				1,141,532	663,030	450,782	27,720	
강풍피해 재해 복구비(3. 4~8)	3321 재난 관리	200-210 보조사업	403-1 자치단체 자본보조	2,370	2,370	-	-	강풍피해 중앙안전대책본부 복구계획확정에 따른 도비 부담금(5. 16)
부당이득금 배상금	3331 도로 건설	400-420 기타	305 배상금등	18,330	18,330	-	-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강제 조정에 따른 배상 및 미불용지 매입(7. 20)
미불용지 매입비	3331 도로 건설	200-220 자체사업	401-01 시설비	239,332	239,332	-	-	"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8. 4~10)	3322 재해 대책	200-210 보조사업	401-01 시설비	405,000	105,000	300,000	-	집중호우피해 공공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10. 11)
"	3321 재난 관리	200-210 보조사업	401-01 시설비	215,000	66,198	148,802	-	집중호우피해 공공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12. 31)
"	3332 건설 종합 관리	200-220 자체사업	401-01 시설비	16,000	14,020	1,980	-	집중호우피해 공공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11. 9)
교통사고 구상금 (지방도583호 '06.7.14~29)	3332 건설 종합 관리	400-420 기타	305 배상금등	15,000	15,000	-	-	지방도상 교통사고 구상금 (10. 1)
장천도로 법면 보수공사	3333 총주 지소 운영	200-220 자체사업	401-01 시설비	230,000	202,280	-	27,720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낙 석피해 발생 지방도 599호선 추가낙석 피해방지(12. 21)
교통사고 구상금 (지방도505호선)	3332 건설 종합 관리	400-420 기타	305 배상금등	500	500	-	-	지방도상 교통사고 구상금 (12. 21)

### 2) 검토내역 및 의견

-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2007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1억 4천 153만 2천원으로 58.1%인 6억 6천 303만원이 지출되었고, 39.5%인 4억 5천 78만 2천원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2.4%인 2천 772만원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 적정한 예산 집행이라 사료되나
- ☞ 지방도교통사고 구상금은 배상금을 연간 발생빈도를 감안하여 당초예산 편성시 일반회계에 계상 집행할 수는 있는지와 지방하천 수해복구 설계용역 개선과 관련, 신속한 지방 하천 수해복구를 기할

수 있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됨.

**다. 기금결산 검토내역**

1) 기금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마)=가+나
		계(나) =(다-라)	수납액(다)	지출액(라)	
재난관리기금	12,952,268	△2,906,061	3,144,586	6,050,647	10,046,207

2) 검토내역 및 의견

-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129억 5천 226만 8천원으로서  
 31억 4천 458만 6천원이 수납되고,  
 60억 5천 64만 7천원이 지출되어,  
 29억 606만 1천원(22.4%)이 감소된  
 100억 4천 620만 6천원으로 적정한 예산운영이라 사료됨

### 3.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 가. 일반회계

##### 1) 세항별 집행 및 불용액 현황

##### ○ 세항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 용 액
			계	명시	사고	
합 계	210,880,500	203,569,671 (96.5%)	5,173,519 (2.5%)	4,037,454	1,136,065	2,137,310 (1.0%)
문화정책과	31,800,011	30,068,135	380,000	380,000	-	1,351,876
관광진흥과	13,485,940	13,399,352	-	-	-	86,588
체육과	27,463,750	25,976,245	1,416,474	1,416,474	-	71,031
환경정책과	24,182,975	23,725,067	348,750	-	348,750	109,158
수질관리과	106,507,447	105,667,012	787,315	-	787,315	53,120
청남대관리 사무소	7,440,377	4,733,860	2,240,980	2,240,980	-	465,537

##### ○ 세항별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세 항 별	불용액	원 인 별				
		계획변경 취 소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합 계	2,137,310	1,300,000 (60.8%)	93,952 (4.4%)	136,927 (6.4%)	592,706 (27.7%)	13,725 (0.6%)
문화정책과	1,351,876	1,300,000	15,000	10,860	21,124	4,892
관광진흥과	86,588			62,978	16,581	7,029
체육과	71,031			5,499	65,531	1
환경정책과	109,158		70,000	10,073	29,084	1
수질관리과	53,120			3,250	49,869	1
청남대관리 사무소	465,537		8,952	44,267	410,517	1,801

## 2) 검토내역 및 의견

- 2007회계연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세출결산을 검토한 바, 예산현액 2,108억 8천 50만만원의 96.5%에 해당하는 2,035억 6천 967만원이 지출되었고 2.5%에 해당하는 51억 7천 352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0%에 해당하는 21억 3천 731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음.

☞ 명시이월사업은 총 6개 사업에 40억 3천 745만 4천원으로

- 충청북도 문화발전증장기 계획 용역 8천만원
- 세계유산등재추진 학술조사 용역 3억원
- 체육회관 증축 및 보수 사업 14억 1천 647만 4천원
- 청남대 자연생태관찰로 조성사업 11억 5천 539만 5천원
- 청남대 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 1억 2천 608만 7천원
- 청남대 관광명소화 사업 9억 5천 949만 8천원

사전 환경성 검토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음

☞ 사고이월사업은 총 4개 사업에 2억 1천 9백만원으로

-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3억 375만원
  -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 4천 5백만원
  - 충청북도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용역 1억 7천 160만원
  - 응천자연형하천 정화사업 편입토지 매입 6억 1천 571만 5천원
- 으로서 사업변경, 절대공기 부족, 편입용지 보상 지연 등으로 비교적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한 것으로 보여지나
- 불용액중 2007회계년도 결산서 38쪽 문예진흥, 자치단체자본보조 13억원, 결산서 52쪽 환경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5천만원, 결산서 57쪽 청남대관리사무소운영 일반운영비 8천 969만원, 결산서 58~59쪽 청남대관리사무소운영 민간위탁금 1억 2천 237만원,

시설비 1억 2천 634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나. 기금결산 검토내역

#### 1) 기금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E=A+B
		계(B)=(C-D)	수납액(C)	지출액(D)	
계	11,694,712	1,083,566	4,757,357	3,673,791	12,778,278
문화예술진흥기금	11,694,712	750,261	1,425,093	674,832	12,444,973
환경보전기금	-	333,305	3,332,264	2,998,959	333,305

#### 2) 검토내역 및 의견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전년도 116억 9천 471만 2천원에

14억 2천 509만 3천원이 수납되고, 6억 7천 483만 2천원원이

지출되어, 7억 5천 26만 1천원(7.9%)이 증가된 124억 4천 497만 3천원이 적립된 것으로 기금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금융기관별 금융상품 내용을 면밀히 살펴 수익이 높은 상품에 예치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이자 입금 등을 감안하여 연도별 운용기금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4.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 가. 일반회계

##### 1) 세항별 집행 및 불용액 현황

###### ○ 세항별 집행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명시	사고	
합 계	28,018,320	19,893,518 (71.0%)	7,773,112 (27.7%)	3,679,430	218,648	351,690 (1.3%)
생명산업 추진단	28,018,320	19,893,518	7,773,112	3,679,430	4,093,682	351,690

###### ○ 세항별 불용액 현황

(단위:천원)

세 항 별	불용액	원 인 별				
		계획변경 취 소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합 계	351,690	-	-	11,486 (3.3%)	340,204 (96.7%)	-

##### 2) 검토내역 및 의견

- 2007연도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세출결산을 검토한 바,  
예산현액 280억 1천 832만원으로  
71%에 해당하는 198억 9천 351만 8천원이 지출되었고  
27.7%에 해당하는 77억 7천 311만 2천원이 이월되었으며  
1.3%에 해당하는 3억 5천 169만 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 명시이월사업은 총 2개 사업에 36억 7천 943만원으로
  - 오송단지 진입도로 토지보상 19억 7천 870만 9천원
  - 밀레니엄타운 토지매입 17억 72만 1천원
 으로서 토지보상 협의 지연 및 토지매입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  
하였음

☞ 사고이월사업은 총 6개 사업에 40억 9천 368만 2천원으로

-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조성계획 수립용역 3천 8백만원
- 밀레니엄타운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2천 750만원
- 오송생명과학단지 상징조형물 디자인 및 실시설계 490만원
- 바이오교육문화회관 전시관 시설공사 30억 9천 859만 2천원
- 바이오농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6억 2천 469만원
- 오송단지 진입로 공사설공사 3억원

으로서 용역기간 부족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비교적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한 것으로 보여지나,

- 불용액 중 2007회계년도 결산서 105쪽 바이오산업운영 시설비 1억 1천 289만원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나. 예비비 검토내역

### 1)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지 결 정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용액	지 출 사 유 (지출결정일)
예 산 과 목								
생명산업추진단(합계)				40,000	0	38,000 (95%)	2,000 (5%)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방안연구 용역	3334 바이오산업 운영	200-220 자체사업	207-01 용역비	40,000	-	38,000	2,000	첨단의료복합단지'08상반기 입지선정 계획에 따라 오송 유치를 위한 대응 용역비

### 2) 검토내역 및 의견

-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2007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4천만원으로 95%인 3천 800만원이 이월되었고, 5%인 2백만원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 적정한 예산집행이라 사료 됨